

기술보증기금은 본인에게 이 약정서상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지식재산공제 약관과 이 약정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팀원	영업팀장

지식재산공제 대출약정서

기술보증기금 앞

20 년의 일기

본인은 기술보증기금(이하 "기보"라 합니다.)과 아래의 조건에 따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지식재산
공제 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이 적용됨을 승인하고 다음 각 조항을 확약합니다.

제1조 거래조건

거래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방식이 수개로 되어있는 경우 기보직원의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내에 “V”표시합니다.)

대 출 종 류		☐ 지식재산비용대출 ☐ 경영자금대출		거 래 구 분		☐ 개별거래 ☐ 한도거래	
대 출 금 액 (한도거래약정금액)		금 원					
대 출 실 행 일 (한도거래개시일)		대출금 지급일 (기보의 한도거래약정 승인일)		대출기간만료일 (한도거래만료일)		20 년 월 일	
대출이자율		지식재산공제 약관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기보가 정한 이자율 연 ()%로 하며 대출기간 만료일 이내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연체이자율 (지연배상금률)		제1조에 의해 결정된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율 연 ()%를 더하여 결정하고 대출기간 만료일 이내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이자·지연배상금 등 계산방법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합니다. (다만, 윤년이 포함 되면 1년을 366일로 봅니다.)					
상 환 방 법	지식재산비용 대출	상환주기 ☐ 매 1개월, ☐ 매 2개월, ☐ 매 3개월, ☐ 매 6개월, ☐ 매 1년					
		상환일 ☐ 부금납부일(부금납부일이 2개 이상인 경우 매월 첫 번째 부금납부일), ☐ 대출실행 응당일, ☐ ()일					
		분할상환 방식 ☐ 대출실행일의 다음 달부터 선택한 상환주기 및 상환일에 균등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 대출실행일로부터 (☐ 1년, ☐ 2년) 동안 거치하고 거치기간 종료일 익일 이후 선택한 상환주기 및 상환일자에 균등 분할하여 상환합니다.					
	경영자금대출	대출기간 만료일 내에 자유로이 상환하되,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전액 상환합니다.					
이자의 지급시기		☐ 대출실행일의 다음 달부터 매월 첫 번째 부금 납부일에 지급합니다. ☐ 대출실행일의 다음 달부터 매월 대출실행 응당일에 지급합니다. ☐ 대출실행일의 다음 달 부터 매월 ()일에 지급합니다.					

대출 실행방법	☐ 대출실행일에 전액 실행합니다. ☐ 한도거래 대출로써, 일정한 요건을 갖춘 본인의 청구를 바탕으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기보가 자금 용도와 필요금액을 확인하고 분할 실행합니다.				
자동이체	☐ 이자납부, <u>원금상환</u> 등 지식재산공제(이하 “공제”라 합니다) 대출과 관련하여 본인이 기보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은 공제 가입시 지정·신청한 본인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실시간자동이체 포함)를 통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별도 예금계좌 지정시 자동이체 계좌변경 신청서 작성·제출)				
지식재산비용대출 추가약정	가. 본인이 선임한 아래 법률대리인에게 직접 대출금을 지급하여도 이의가 없기로 합니다. 나. 본인이 분할상환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고 기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의 연장이 가능할 경우, 대출기간 만료일 및 대출이자율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기보가 정하는 기간단위로 대출만료일의 연기 및 공시된 지식재산비용 대출이자율에 기보가 별도로 정하는 가산이자율을 더하여 금리변경을 처리하기로 합니다. 이때, 기보는 연기된 대출기간 만료일과 대출이자율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다. 대출 실행 이후 해당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에서 약정한 상환방법에 관계없이 해당 회수·수령 금액을 즉시 상환하기로 하고, 미상환시 기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율을 가산하기로 합니다. 1. 소송 취하, 청구의 포기·인낙, 소송 탈퇴, 소송비용 확정 등을 통해 대출금에 대한 회수금이 발생한 경우 2. 침해소송 승소 또는 화해권고결정, 조정 등을 통해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경영자금대출 추가약정	본인의 대출기간 연장 요청에 대하여 기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대출기간 연장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서를 징구하지 아니하고 기보가 정하는 기간단위로 대출만료일의 연기를 처리하기로 하며, 기보는 연기된 대출기간 만료일을 연기 후 10일 이내에 유선이나 전자적 방법 또는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법률대리인 현황	1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출금 지급액	
	2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대출금 지급액	

제2조 한도거래

- ① 한도거래 대출의 경우에는 아래 각 호와 같이 하도록 합니다.
 1. 지식재산비용대출의 한도거래 설정금액 범위 내에서 개별대출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보가 정한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기로 합니다.
 2. 약정기한 이내에서 개별대출의 대출기간을 달리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은 약관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로 하기로 합니다.
 3. 개별대출의 신청시 대출금액은 약관 제26조와 제29조에 의한 대출한도 이내에서 신청하기로 합니다.
 4. 대출금 상환 등으로 한도 여유액이 추가로 발생하더라도 동 추가 한도 여유액은 대출 신청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② 한도거래 대출로 분할 취급된 각 개별대출은 건별로 각각 대출실행일의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③ 산업재산권의 출원을 원인으로 하는 한도거래 대출 승인 이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한도거래 내에서 관련 추가 대출실행이 제한됩니다.

1. 산업재산권의 출원 거절결정
2. 산업재산권의 출원 자체취하, 포기, 중단, 출원인(본인) 변경 등

제3조 약정 미이행 및 자금용도 외 유용시 제재조치

- ① 본인은 이 약정에서 정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 ② 본인은 대출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히 제시하고 기보와의 대출거래로 받은 자금을 당초에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지 않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기보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지급받아 당초 신고한 수취인에게 송금(해외송금포함) 또는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증빙서류와 함께 지체 없이 기보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 ④ 본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기보는 서면으로 그 사유의 해소 또는 채무상환을 통지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기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본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1. 이 약정서의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기보에 손실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대출신청 시의 자금용도로 사용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3. 기보로부터 대출금을 직접 지급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개월 이내에 송금(해외송금포함) 또는 지급하지 않거나, 제3항의 지급사실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또는 당초 신고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송금 또는 지급한 것이 확인된 경우

제4조 이자 및 연체이자 등

- ① 이자, 연체이자, 수수료 등은 현재는 물론 장래에 있어서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기보의 소정의 비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② 이자·분할상환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약관 제9조에 따라 기보가 정하는 비율로 그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④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초과지급 및 이자원가 등으로 한도금액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한도 초과된 다음 날부터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비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기보는 변경 이전에 본인에게 변경사항을 통지하며, 변경된 비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은 변경 이후부터 이 약정에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5조 담보·보험

- ① 본인의 신용악화, 담보가치감소 등의 사유로 추가적 담보의 제공이 채권보전상 필요하다고 기보가 인정한 때에는 본인은 기보의 청구에 의하여 곧 기보가 인정하는 담보를 추가로 제공하기로 합니다.
- ② 담보물의 처분은 법정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보가 일반적으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시기·가격 등에 의하여 추심 또는 처분하고 그 취득금에서 모든 비용을 뺀 잔액을 제9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기로 하며, 본인은 나머지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곧 변제하기로 합니다.
- ③ 본인은 담보에 대하여 기보가 요청하는 경우 기보가 정하는 종류와 금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그 보험금 청구권에 기보를 위하여 질권을 설정하기로 하며, 이 약정이 존속하는 동안 보험계약을 계속

유지하기로 합니다.

제6조 기한의 이익 상실

① 본인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약관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기보는 본인의 공제대출 관련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본인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도달하면 본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시부터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 1. 부금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하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때 또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때
- 3.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사유가 발생한 때
- 4. 신용회복위원회 또는 새출발기금(주)에 채무조정 신청이 있는 때
-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 6. 기보가 본인의 보증거래와 관련하여 보증 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②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약관 제23조 제2항에 따라 기보는 본인의 공제대출 관련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본인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 통지가 기한의 이익 상실일 3영업일 전까지 본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본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지기로 합니다.

- 1. 공제대출금 원금의 상환을 30일 이상 연체한 때
- 2. 공제대출금의 대출이자, 연체이자 또는 분할상환금을 60일 이상 연체한 때
- 3. 공제대출을 받은 후 동일한 적립형 공제계약에 대하여 계속하여 6회 이상 부금의 납부를 지연한 때. 다만, 대출잔액 합계액이 부금납부 합계액의 범위내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보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약관 제23조 제3항에 따라 기보는 본인의 공제대출 관련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본인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독촉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기보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기보는 본인이 공제대출 관련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며 본인의 적정한 이의 또는 이행없이 위 기간이 도과하면 본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이를 곧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 1. 기보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한 때. 다만, 공제대출의 경우 제2항에 따릅니다.
- 2. 본인의 부금 외 소유재산에 대해 제3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의 권리침해가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된 때.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 가. 경영자금대출 한도 내 대출의 경우
 - 나.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으로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 3. 공제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기보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때

4.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 등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5.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신용도판단정보 및 공공정보에 등록된 때
 6. 경영자금대출의 공제대출원리금 합계액이 약관 제18조제2항의 사유로 공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아 약관 제19조에 따라 산출한 해지환급금에서 원천징수예상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때
 7. 약관 제25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하여 본인이 기보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기보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연체이자의 납부 등 본인으로부터 정상적인 거래에 대한 의사표시가 있다고 기보가 인정할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기보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합니다.

제7조 기보로부터의 상계 등

- ① 공제대출의 기한의 도래, 제6조에 의한 기한 전 채무변제의무 및 보증약정에 따른 사전상환채무 부담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기보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본인의 부금(이자포함)을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기보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기보에 대한 공제대출 관련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보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본인을 대리하여 본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금(이자포함)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대리환급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의 채무와 부금을 상계할 경우, 기보는 상계에 앞서 본인의 부금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여야 하며, 채권·채무의 이자 등과 연체이자의 계산기간은 기보의 상계통지가 본인에게 도달한 날, 기보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기보가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8조 부대비용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대출에 따르는 제비용을 기보가 정하는 비율·계산방법·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의하여 본인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기보의 채권 또는 담보권의 행사나 보전[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을 말함]
2. 담보목적물의 조사 또는 추심
3. 채무이행의 독촉을 위한 통지

제9조 변제충당 순서

공제대출에 관한 상환금액이 그 대출채무의 전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제8조의 비용, 위약금의 순서로 그 변제에 충당합니다.

제10조 위험부담 · 면책조항

- ① 본인이 기보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 · 사변 · 재해 · 수송도중의 사고 등 기보 자신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 · 손상 · 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본인은 기보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본인이 기보의 장부 · 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기보의 기록과 본인이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 한 후 갚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제1항의 분실 · 손상 · 멸실의 경우에 기보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증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보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③ 본인이 미리 신고한 인감 · 서명을 기보가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그 인감 · 서명에 관하여 위조 · 변조 · 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제11조 감액 · 정지

- ① 개별거래의 경우 기보는 대출계약 체결 후 대출실행 전에 아래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출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출을 실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제사업 운영관련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시
 - 가. 조달금리 폭등 등의 사유로 자금조달에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 나. 유동성위기 및 지급여력 부족 등의 사유로 대출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 다. 「지식재산공제사업 운영 및 감독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을 받은 경우
 - 라. 기타 위에서 언급한 사유에 준하는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본인의 신용상태의 현저한 악화시
 - 가. 기보 조기경보등급에 따라 사업안정성 취약기업으로 분류된 경우
 - 나. 대표자 또는 실제경영자를 변경하여 정상적인 대출거래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다.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 결과 감사의견이 부적정 또는 의견거절로 제시된 경우
 - 라. 신문, [TV 등](#) 공신력 있는 매스미디어에 본인 신용상태에 현저한 하락이 예상되는 뉴스가 보도되어 사실이 확인된 때
 - 마. 본인의 신용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사가 시작되었을 때 및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송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한 때(지식재산권 관련 법적분쟁 제외)
 - 바. 부금납부를 유예 중일 때
 - 사.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한 때
 - 아. 기타 위에서 열거한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한도거래의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대출거래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기보는 통지에 의하여 제1조의 대출(한도)금액을 줄이거나, 남은 거래기간에도 불구하고 대출 실행을 정지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은 한도감액으로 말미암은 한도초과 금액은 곧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권 설정

- ① 이 약정에 의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아래에 표시한 부금에 질권을 설정하고 기보 앞으로 그 증서의 인도를 마쳤습니다.

- ② 제1항의 질권의 효력은 원금·수익권(이 계약 이후에 적립되는 금액을 포함합니다)과 이에 부수하는 이자·수익의 수익권, 특별장려금, 법정장려금 등에 미칩니다.
- ③ 부금 등이 기간연장·개서·갱신·분할·병합·증액·감액 또는 이자원가된 경우에도 그 위에 질권의 효력이 미침을 승인합니다.
- ④ 기보는 제1항에 의한 질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약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보의 채권과 아래 표시의 부금 등을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보는 대리환급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고객에게 통지합니다.
- ⑤ 상계 등에 따라 질권의 목적물인 부금 등을 처분하여 채무변제에 충당한 후 잔여금액은 설정자(예금주) 명의의 계좌로 반환하기로 합니다.
- ⑥ 기보의 승낙 없이 아래에 표시한 부금에 대하여 양도 또는 질권 설정 등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질권의 목적인 부금 등의 표시
 (단위:원)

공제계약번호	명의인/수익자	담보제공금액	금액 (계약액)	(20 . . .까지) 입금누계액	공제계약일	만기일

※ 본란은 담보제공자가 직접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 신고사항의 변경

- ① 본인은 인감, 서명, 상호, 명칭, 대표자, 주소 및 기타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곧 서면으로 신고하기로 하며, 서면신고가 있기 전에는 기보가 변경 없는 것으로 처리하여도 이의 없기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신고를 게을리 함으로써 기보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된 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보기로 합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 전의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제14조 협조의무

- ① 본인의 재산, 경영, 업황 등에 대하여 기보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즉시 회보하며, 장부열람 등 조사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 ② 본인은 매 결산기마다 결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결산일 이후 3월 이내 기보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제15조 기타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바는 약관 및 법령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6조 특약사항

본인	(인)

기보 직원으로부터 약정서 중요사항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은 경우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인	주 소	
	상 호	
	대표자 (성명)	인
	본인은 약관, 이 약정서 사본, 공제대출 상품설명서를 확실히 수령하였으며, 중요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습니다.	
		인

본인확인(기보직원)	
성명:	인